



전 주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22드단,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
원 고 이 ()
주소 전북

송달장소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, H타워 301호 (송달영수
인 전종필)

등록기준지

피 고 김 ()
주소 전북

송달장소 전주시

등록기준지

사 건 본 인 1. 김 ()
2. 김 ()

사건본인들 주소 전북

사건본인들 등록기준지

변 론 종 결 2023. 9. .



판 결 선 고 2023. 10.

주 문

1.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
2.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.
3.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720만 원을, 장래양육비로 2025. 10. 1.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40만 원을 각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.
4.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5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, 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로 46,000,000원을 지급하고, 장래양육비로 이 판결 확정일부터 2025. 10. 1.부터 2029. 9. 30.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100만 원을 각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인정사실

1) 원고와 피고는 2009. 3. 1.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들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었다.